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2.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3. 2.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가. 제안이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 12.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어 2003. 3. 26일부터 인감증명청은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등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험가입 대상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자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인감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 (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2002. 3. 25 개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개정)이 2003. 3.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시에도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거주자이외의 증명청에서도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서 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감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에 인감보증보험료로 1천 89만

원이 기 편성되었음.

○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형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1건 300원)와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 수수료(1건 250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각각 건당 500원씩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2003. 3. 26일 이후 거주지이외의 증명청에서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1통당 800원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예산액은 충분한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보험가입금액 3억원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액임.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보험가입 이전의 인감사고에 대한 책임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인감사고 대비 보험가입금액으로 3억원은 적은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중 최고액이 3억원이며, 인감사고의 평균치로 볼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충분한 보상금액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체등의가입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청은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체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보험가입 대상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자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의 인감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3. 개정근거

- (1) 인감증명법(2002.3.25 법률 제6667호) 제15조
⟨⟨시행일 : 2003.3.26⟩⟩
- (2) 인감증명법시행령(2002.12.31 대통령령 제17867호) 제19조, 제20조
⟨⟨시행일 : 2003.3.26⟩⟩

4.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2003년 예산에 10,890천원 편성.
- 나. 협의 :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와 협의 완료함.
-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증 가목란을
삭제하여,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46종)”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